

8.31.(월)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·납부 하세요

- 12월 결산법인,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·납부 -
- 고환율/고유가/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2개월 연장 -

① 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·납부하여야 합니다.

- 12월 결산법인은 올해 상반기(1.1.~6.30.)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·납부하여야 하며, 이번 8월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54.5만 개로 전년도에 비해 1.7만 개 증가하였다.

<최근 5년간 중간예납 신고대상 법인 현황>



- 법인세 중간예납은 ①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%로 하거나 ②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·납부 할 수 있다.
 - 다만,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,600여 개 법인은 가결산 방식으로만 신고·납부 하여야 한다.

*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중소기업은 ①과 ② 중 선택 가능

-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, 2026년도 중 신설된 법인,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,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은 중간예납 신고·납부 의무가 없다.

□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중소기업은 2개월, 그 외 일반기업은 1개월까지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다.

○ 납부세액이 1천만 원 ~ 2천만 원 사이인 중소기업의 경우 1천만 원은 8월 31일까지, 나머지 금액은 2개월 후인 11월 2일*까지(그 외 일반기업은 나머지 금액을 9월 30일까지) 나누어 낼 수 있고

* 올해 10월 31일은 토요일이므로 11월 2일 월요일까지 납부 가능

○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50%는 8월 31일까지, 나머지 50%는 11월 2일까지(그 외 일반기업은 나머지 50%를 9월 30일까지) 납부하면 된다.

분할납부 금 액	▶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→ 1천만 원 초과 금액 ▶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인 경우 → 납부할 세액의 50% 이하 금액
분할납부 기 한	▶ 중소기업 :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(올해는 11.2.까지) ▶ 일반기업 :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(9.30.까지)

* (예) 납부할 세액이 1,700만 원인 중소기업의 경우 : 8.31.까지 1,000만 원 납부, 11.2.까지 700만 원 납부
 납부할 세액이 5,000만 원인 일반기업의 경우 : 8.31.까지 2,500만 원 납부, 9.30.까지 2,500만 원 납부

② 홈택스로 편리하게 신고·납부하세요.

□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대상 법인은 8월 1일부터 홈택스(PC) 또는 손택스(휴대폰)로 편리하게 신고·납부할 수 있다.

○ 「중간예납 조회서비스」에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세액과 중간예납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

* 홈택스 경로 : (원스톱) 접속 후 알림창 → 중간예납세액 조회 서비스 바로가기

○ 직전 연도 산출세액의 50%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·납부하고자 하는 법인은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제공하는 「미리채움 서비스」를 통해 분납세액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.

* 홈택스 경로 : (원스톱) 접속 후 알림창 →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

③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 등의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.

- 국세청은 ①고환율, ②고유가, ③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납세자 신청 없이 직권으로 2개월(8.31→11.2.) 연장할 계획이다.

| 중간예납 직권 납부기한 연장 대상 |

구 분	선 정 기 준	법인수 (세액)
①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	수입원재료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, 도소매업, 음식업으로 전년(25년)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율이 40%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	39,695개 (8,980억원)
② 고유가 피해 중소기업	원가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운수업으로 전년(25년)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율이 40%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	691개 (80억원)
③ 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기업	25년 매출액 중 홈플러스 매출액이 30% 이상인 중소기업	116개 (38억원)
	합 계	40,474개 (9,092억원)

* 합계는 중복 법인수 제외, 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%로 계산

- 이번 납부기한 연장으로 약 4만 개 법인에게 0.9조 원의 자금 유동성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,

- 직권 연장 대상 법인이 아니더라도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으로,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홈택스*를 통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.

* 홈택스 검색창에 “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” 입력

- 국세청은 앞으로도 경제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,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.

담당 부서 <총괄>	법인납세국	책임자	과 장	신재봉 (044-204-3301)
	법인세과	담당자	사무관	박수영 (044-204-3312)
<협조>	정보화관리관	책임자	과 장	권동철 (044-204-2551)
	홈택스2담당관	담당자	사무관	지승환 (044-204-2552)

참고 1 12월 결산법인 중간예납세액 신고·납부 개요

- (신고대상) 영리내국법인, 수익사업 있는 비영리내국법인,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
- 다만,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내국법인 등은 신고·납부의무 면제

중간예납 신고·납부의무 면제 대상

-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
- 해당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(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)
-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,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,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
-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등
-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
-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
-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조 제3호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,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학협력단 등

- (중간예납 방식) 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방식과 ② 상반기('26년 1월 ~ 6월) 실적을 가결산하여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
- *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법인과 그 연결모법인은 ②가결산 방식으로 신고

중간예납 방식(①·② 중 선택)

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방식 : 직전 사업연도 확정신고 법인세의 1/2을 납부

$$\text{중간예납세액} = \text{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(공제·감면세액 등 차감)} \times 50\%$$

② 가결산 방식 : 상반기('25.1. ~ '25.6.) 영업실적을 가결산하여 납부

$$\text{중간예납세액} = \left[\begin{array}{l} \text{상반기 과세표준} \times 2 \\ \text{[각사업연도소득금액(익금} \ominus \text{손금)} \\ \text{- 이월결손금 - 비과세소득 - 소득공제]} \end{array} \right] \times \text{세율} \times \frac{6}{12} - \begin{array}{l} \text{상반기} \\ \cdot \text{공제·감면세액} \\ \cdot \text{원천징수세액} \\ \cdot \text{수시부과세액} \end{array}$$

- (납부) 신고를 마친 뒤에는 세무서, 은행 등 방문 없이 홈택스*를 통해 신용카드·간편결제 등으로 납부 가능

* 신고 직후 : 팝업창 >> '납부하기' 선택

* 일반 경로 : 홈택스 >> 납부·고지·환급 >> 납부 >> 납부할 세액 조회/납부

참고 2 홈택스 중간예납세액 조회 · 미리채움 서비스 개요

□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

- 홈택스의 「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」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예상 중간예납세액과 중간예납 면제*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

*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

* 홈택스 경로  (원스톱) 접속 후 알림창 →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 바로가기

●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세부내역

사업연도 월수				12
산출세액	120,927,032	공제감면세액		0
가산세액	0	확정세액		120,927,032
수시부과세액	0	원천납부세액		1,798,720
차감세액	119,128,312	중간예납세액		59,564,156

□ 미리채움(Pre-filled) 서비스

-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법인은 분납세액만 입력하면 신고가 완료되는 「미리채움 서비스」를 이용할 수 있음

* 홈택스 경로  (원스톱) 접속 후 알림창 →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

● 신고 및 납부세액 계산

·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(자기계산기준)으로 신고할 경우 파일변환신고 또는 세무서 제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 (단위: 원)

·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			· 납부세액계산		
101	산출세액	134,260,000	108	중간예납세액 (107×6/직전사업연도월수)	67,130,000
102	공제감면세액		109	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세액공제신청서 작성	
103	가산세액		110	차감중간예납세액(108-109)	67,130,000
104	확정세액(101-102+103)	134,260,000	111	(미납세액, 미납일수, 세율) 가산세액	() , 2.2/10,000
105	수시부과세액		112	납부할세액계(110+111)	67,130,000
106	원천납부세액		113	분납세액	33,565,000
107	차감세액(104-105-106)	134,260,000	114	납부세액(112-113)	33,565,000

참고 3 납부기한 직권 연장 개요

□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

구 분	선 정 기 준	법인수 (세액)
①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	수입원재료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, 도소매업, 음식업으로 전년(25년)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율이 40%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	39,695개 (8,980억원)
② 고유가 피해 중소기업	원가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운수업으로 전년(25년)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율이 40%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	691개 (80억원)
③ 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기업	25년 매출액 중 홈플러스 매출액이 30% 이상인 중소기업	116개 (38억원)
	합 계	40,474개 (9,092억원)

* 합계는 중복 법인수 제외, 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%로 계산

□ 납부기한 연장 절차 및 연장 기간

- (연장 절차)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필요하나, 직권 연장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
- (연장 기간) 법정 중간예납세액 신고기한인 8월 31일까지 신고한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을 당초 8월 31일에서 11월 2일로 2개월 직권 연장*

* 홈택스 신고 완료 후 납부서 출력 시 연장된 납부기한(11월 2일)으로 출력

- 아울러,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금액의 납부기한도 2개월 직권 연장됨

Ⅰ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의 분할납부기한 Ⅰ

구 분	일반기업	중소기업
분할납부기한	'26년 9월 30일 → '26년 11월 30일	'26년 11월 2일 → '27년 1월 4일